1 예 산 총 칙

제1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	
계	4,813,710,000	481,371,000	
일 반 회 계	4,099,400,000	409,940,000	
특 별 회 계	714,310,000	71,431,000	
기타특별회계	439,010,000	43,901,000	
의료급여기금운영	356,764,000	35,676,400	
치 수 사 업	27,100,000	2,710,000	
경 북 도 립 대 학 운 영	7,409,000,	740,900	
광역 교 통 시 설	907,000	90,700	
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	46,830,000	4,683,000	
공기업특별회계	275,300,000	27,530,000	
지역 개 발 기 금 운 영	275,300,000	27,530,000	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,982백만원으로 한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(△)감	증 감 비 율
계	4,813,710,000	4,576,610,000	237,100,000	5.2
일 반 회 계	4,099,400,000	3,863,300,000	236,100,000	6.1
특 별 회 계	714,310,000	713,310,000	1,000,000	0.1
의료급여기금운영	356,764,000	356,764,000		
치 수 사 업	27,100,000	26,100,000	1,000,000	3.8
경북도립대학운영	7,409,000	7,409,000		
광역교통시설	907,000	907,000		
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	46,830,000	46,830,000		
지역개발기금운영	275,300,000	275,300,000		